



住民카드事業説明資料

'97. 4

内 務 部
濟 州 道

住民카드事業説明資料

'97. 4

内 務 部
濟 州 道

御 紙

一、住民カード事業の概要

二、住民カードの機能

三、住民カードの普及

四、住民カードの活用

五、住民カードの将来展望

I. 住民カード事業 基本方向

① 住民카드發給은 國民便宜를 최우선 考慮

- 現行 住民등록증은 '83년 일제경신이후 14년이 경과되어 신분 확인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위조, 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일제경신이 필요한 시기에
- 現재 각 개별법에 의거 발급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문의 7가지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수록하여
- 다기능 주민카드를 발급함으로써
 - 연간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의 감축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의 통합운영으로 연간 수천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고
 - 일선행정기관의 증명발급 종사인력을 국민복지 및 환경 분야 등 새로운 행정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 의료보험증의 경우, 세대원이 각각 가질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시기에 쉽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 주민카드 사업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국민 종합복지카드”로 국민편의를 대전제로한 사업임

② 個人情報保護對策 力點推進

○ 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의 내용은 분야별로 법으로 정한 운영자만 관리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인과 분야별 운영자만 해당자료를 열람·수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자료의 임의사용을 엄격히 방지

• 주민등록사항, 인감은 읍·면·동 담당공무원

•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 담당공무원 및 교통경찰관

• 의료보험사항은 의료보험기관, 병·의원, 약국

•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업무 담당자

○ 주민카드 관리·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불법유출에 대비하여

• 전산망은 독립된 폐쇄망을 사용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제3자의 도청, 무단복제, 내용변경 등을 방지하고

• 내부 업무담당자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내역, 처리시간, 담당자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보관

• 자료의 불법유출시 처벌규정도 엄격히 적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③ 情報集中 防止

○ 주민카드 일제경신 초기에 전국민의 카드발급을 위한 기간 단축과 개인별 자료일치를 위해 종합자료망의 일시적 구축이 불가피하지만 일제경신이후 신규·재발급시에는 점차 관련기관의 전산망 자료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저장된 자료는 카드발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기술적 장치도 개발 설치

○ 제도적으로는 주민등록자료의 집중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주민등록법제17조8의 규정에 “일제발급후 자료분산관리” 규정과 “주민카드발급센터의 자료보관 상황을 열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민 사생활보호를 위한 자료관리에 철저

④ 國民的 共感속에 事業推進

○ 주민카드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여론, 국회 논의,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

II. 住民카드 事業計劃

① 추진배경

가. 주민등록증 경신 필요

□ 주민등록증 경신시기 경과

- 우리나라는 '68년 이후 평균 8년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여 왔으나 현행 주민등록증은 14년이 지남
- 현 주민등록증은 훼손되거나 마멸되고 사진의 탈·변색과 용모변화 등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는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증 본래의 역할 수행이 곤란

□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

- 신분증의 사진, 기재내용 등을 변조하여 여권위조, 경제범죄, 미성년자의 유흥가 출입 및 고용, 범법자의 신분위장 등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 '83년 이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2천만건에 달해 사회안녕 질서 유지와 국가안보 취약

□ 기능이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증

- 상시소지 의무의 중요성에 비해 기재내용이 단순하여 이용 용도가 미흡하고 인적사항이 동일한 각종 휴대증명의 통합의견 대두
- 제증명의 국가공증시대에서 증명정보의 휴대화로 전환 필요
- 휴대증명의 다양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증명제도 도입

나. 경제수준과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신분증 도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

- 현재의 종이증명시대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신분증 시대로 전환
- 국민편의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각종 증명을 하나로 통합

□ 정보의 개인 휴대화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사회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증명내용을 전자카드에 수록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연간 발급건수 : 1억7천만통
-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증명을 전자카드로 대체하여 국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정보화시대의 전자열쇠

- 정보화시대에 제반 민원처리는 무인, 재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자매체 필요
- 각종 신고서 처리, 컴퓨터 통신, 전자거래 등 사회·경제 활동의 근간으로 전자신분증 활용

다. 정보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정부 구현
- 제증명 발급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보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증명 발급제도의 획기적 개선
- 다기능 전자카드의 보급으로 국민들의 정보마인드 확산과 증명의 다용도 활용

□ 정보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 2천년에는 IC카드 시장이 총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 고부가가치의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 계기 마련
 - ※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 비메모리분야가 72% 차지

② 추진목표

민원행정의 세계화

- 국민편의 도모
- 행정의 능률화
- 세계화 전략에 기여
- 정보화 사회의 실현
- 국내 정보산업 육성



'99년 주민카드 실용화

- 주민카드 발급센터 구축
- 사회전반의 주민카드 운영망 구축
- 17세이상 3,400만명의 주민카드 발급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주민카드로 통합

③ 추진방침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증명을 주민카드로 통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통합

□ 사업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 '96년 : 발급센터 구축 및 업무개발
- '97년 :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망 구축
- '98년 : 주민카드 발급 및 시험운영
- '99년 : 실용화

□ 예산은 비용/편익을 감안, 기관별로 분담

- 발급센터 구축 및 전자카드 제작·발급은 국비와 지방비
- 운영망 구축비는 기관별로 부담, 국민편익 부분은 국비 추진

□ 추진체제 확보

- 추진협의회가 주민카드 발급 관련 최고 심의기관이 되어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 종합 조정
-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관리를 위해 업무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기획단 설치·운영
- 전자카드 기술자문 및 감리를 위해 감리기관 지정·운영
- 전자카드 제작 및 발급 전담기관 지정·운영

□ 주민카드는 전자카드로 제작

- 현행 주민등록증의 단순기능, 위·변조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증으로서의 다목적 기능 구현이 가능한 최신 기술의 전자카드를 이용
- 사후 관리 및 IC 칩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산업 육성, 국가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칩을 사용
- 제작과정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제작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은 외부에 기록하고 IC칩 내부에는 주민등록사항, 운전면허사항 등 각 업무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증명내용 기록

□ 통합증은 업무별로 독립적 증명기능 수행

- 기존의 단순 신분확인용에 부가하여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을 주민카드에 수록, 휴대증명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도의 완전개선
 - 연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량 : 약 1억2천만건
- 읍·면·동에서 발급하여 사용하던 인감증명서를 주민카드에 수록된 인감으로 대응
- 통합신분증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교통위반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관련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확인을 통합신분증으로 처리

□ 최신의 개발기술을 응용하여 업무개발

- S/W는 전체 전산망의 일관성 유지와 보안성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망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
- 개발환경은 정보통신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S/W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최신 환경으로 구축
- 발급센터에는 통합자료의 구축 및 운영 S/W, 주민카드 발급기와의 연동프로그램, 발급 프로그램 등을 개발·설치
- 읍·면·동에는 발급센터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진, 지문, 인감자료를 입력·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설치
-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는 주민카드 발급·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설치

□ 주민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여러가지 증명이 통합된 증을 휴대증명으로 활용하고 본인확인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전반의 운영기반 구축
- 휴대용 면허확인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 의료보험보험자는 의료보험 자격, 징수, 급여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보험취급 요양기관에서는 자격확인, 진료기록의 색인카드로 활용

□ 최신의 고난도 보안기술 적용

- 발급센터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정보를 보유하게 되므로 철저한 보안체계를 확보하되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비설치공간에 대한 접근통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기설치 및 건물설계·구축, 경보장치의 설치, 외래자에 대한 경비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시설물 보안체계 확립
- 전산망보안과 비허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망은 별도의 독립된 폐쇄망으로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통제 기능을 구현하여 보안체제 강구
- 카드내 정보는 보안알고리즘과 전자카드의 보안키 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위·변조 및 불법사용을 최대한 방지
- 카드표면에 특수 인쇄기술을 적용하여 도안을 설계하고 사진, 문자의 위·변조 방지장치를 하되 IC내부에는 업무별로 분리·저장하고, 개인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타인사용을 방지하되 관련 기관은 해당자료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

④ 주민카드 수록항목

분 야	항 목
계	35개 항목
주 민 등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성명 <li style="width: 50%;">• 사진 <li style="width: 50%;">• 주민등록번호 <li style="width: 50%;">• 주소 <li style="width: 50%;">• 호주 <li style="width: 50%;">• 세대사항 <li style="width: 50%;">• 병역사항 <li style="width: 50%;">• 주민등록 기관코드
운 전 면 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면허종류 <li style="width: 50%;">• 면허번호 <li style="width: 50%;">• 발행기관 <li style="width: 50%;">• 면허조건 <li style="width: 50%;">• 적성검사기간 <li style="width: 50%;">• 교부일자 <li style="width: 50%;">• 정지여부 <li style="width: 50%;">• 면허상태
의 료 보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보험자기호 및 명칭 <li style="width: 50%;">• 관리번호 <li style="width: 50%;">• 보험자구분 <li style="width: 50%;">• 피보험자사항 <li style="width: 50%;">• 피부양자사항 <li style="width: 50%;">•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li style="width: 50%;">• 진료지역 <li style="width: 50%;">• 유효기간
국 민 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최초취득일 <li style="width: 50%;">• 가입종별 <li style="width: 50%;">• 총가입월수 <li style="width: 50%;">• 급여종별 <li style="width: 50%;">• 수급증서번호 <li style="width: 50%;">• 최종수록일 <li style="width: 50%;">• 가입상태 <li style="width: 50%;">• 최종보험료납입유무
인 감	• 인감(선택)
지 문	• 지문
발 급 기 관	• 발급기관장

구분	과목	시간	비고
1. 1학년	국어	100	
	수학	100	
2. 2학년	국어	100	
	수학	100	
3. 3학년	국어	100	
	수학	100	
4. 4학년	국어	100	
	수학	100	
5. 5학년	국어	100	
	수학	100	
6. 6학년	국어	100	
	수학	100	
7. 7학년	국어	100	
	수학	100	
8. 8학년	국어	100	
	수학	100	
9. 9학년	국어	100	
	수학	100	
10. 10학년	국어	100	
	수학	100	
11. 11학년	국어	100	
	수학	100	
12. 12학년	국어	100	
	수학	100	

Ⅲ. 제주도 사업계획

① 추진경위

주민카드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시·도가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선정 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흡한점을 조기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2월에 “주민카드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② 사업개요

○ 추진기간 : '97. 1~'98. 9월

○ 카드발급대상 : 17세이상 약 40만명

○ 소요예산 : 32억원

○ 카드발급계획 : 98년 4월

※ 제주도에 이어 98년 10월부터 전국 발급

IV. 기대 효과

① 국민편익 측면

-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주민카드로 대체함으로써 증명민원의 획기적 개선도모
- 연간 1억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주민카드는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IC내에 최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어 신분증의 휴대가 간편하고 사회 전반의 신용사회 조기구축에 기여
-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의 첨단화 및 개인 휴대화로 사회복지 행정의 고도전산화, 국민복지 향상 도모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 ONE-STOP 민원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보사회에 걸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② 행정편익 측면

-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제증명 발급의 무인화로 행정기관의 인력을 대폭 절감하고 대민 행정업무 간소화
-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함으로써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절감을 통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③ 사회적 측면

- 최신의 고난도 기술로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사회·경제사범, 미성년자 유흥업소 취업·고용 등 신분증의 위·변조로 인한 사회문제를 제거하여 사회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카드의 분실시에는 즉시 재발급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분실된 카드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각종 범법행위예방
- 주민카드에 개인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은 개인의 주민카드를 이용 필요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제증명의 무인화를 이룰 수 있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음
- IC카드는 보안기능이 뛰어나므로 출입통제, 컴퓨터시스템 통제분야 등에 전자열쇠로도 사용가능
- 진료기관에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확인 및 환자관리가 용이하므로 자격미확인에 의한 진료비의 사후정산, 무자격진료, 자격상실 후 진료 등 이의신청 업무의 대폭적인 감소가 기대됨
- IC카드 국산화 추진을 통해 반도체 및 관련산업의 육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로 정보사회 진입을 가속화시키며 최첨단 전자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을 통해 대국민 정보마인드 확산
- 복합적인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H/W 및 S/W의 수요증가로 정보산업 육성 계기 마련
- 읍면동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기관의 자료도 제공받아 민원인에게 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각 가정에까지 구축되면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자의 집에서 행정기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IC카드내의 의료보험증과 의료보험 전산망을 이용 진료예약 등 연계서비스를 창출하며, 또한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고속통신망을 통하여 가정에서 전문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받을 수 있음
- 교통부분의 전산화
 - 주민카드를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보험업무에 활용하여 해당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 및 보험료납부 서비스를 창출
- 조세신고 및 납부의 전산화
 - 조세전산화 시기에 맞추어 주민카드를 이용 가정에서 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며 Home Banking을 통해 납부하는 서비스 개발

- 휴대용 면허확인기를 이용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자동발부하여 범칙금 누수방지 및 인력, 예산 절감
- 읍면동의 주민등록표원장 작성 폐지
 - 본인확인을 위해 현재까지 이중으로 관리하던 주민등록 관리제도를 사진의 DB구축을 계기로 전산화일로 일원화 함으로써 읍면동의 업무량 감축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 전출입시 인감대장이 우편으로 도착될 때까지 발급이 지연되던 인감이 전산화되고 주민카드에 수록되므로 인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즉시 발급가능
- 각종 민원처리 업무의 간소화
 - 전출입, 출생,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의 신고 일원화
 - 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 검인제도 개선
 - 주민카드 의료보험사항 기록 및 변경 처리 개선
 - 보험급여비 청구 제도개선 등
- ONE-STOP 민원서비스 체제 기반구축
 -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고 공공기관이 이에 수용될 경우, 주민카드를 본인 확인 매체로 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으로 손쉽게 발급

V. 主要爭點事項 및 對策

① 法的根據 및 國民同意

쟁점사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미비 • 국민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개별법령에 근거 증명경신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 법령개정은 증명의 전산서식, 운영절차 등이 확정된 후 가능 • 주민등록법 등 개정(안)에 제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3. 7 주민등록법개정(안) 입법예고 -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반영 - 특히, 전문가 토론회를 수시 개최 - 국회에서 법안 심의시 중점 검토 • 법개정은 기존 법률 개정방향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등 현재 증명을 경신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는 아님 - 각 증명의 운영절차를 개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혼란 방지 - 특별법 제정은 중복규정으로 비효율적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별도법령 존재 <p><주요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카드 발급 및 발급센터 설치근거 - 정보집중 및 방지 관련규정 - 주민카드 정보악용 처벌규정 등 ※ 주요 개정내용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카드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② 情報集中

쟁점사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집약의 법적 근거 미비 집중된정보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악용 - 감시통제 	<p><기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경신후 정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크 저장자료 완전삭제 - 디스크 재설계로 자료복구 차단 <p><제도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법 개정(안)17조의8에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카드 발급센타 설치근거 - 정보의 타용도 사용제한(공안용 불가) - 일제경신후 정보분산 규정

③ 私生活 侵害, 監視, 統制

쟁점사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지문은 통제용도 안기부 등 국가 권력의 정보악용 	<p><기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자의 정보이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 및 보안키 사용 <p><제도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과 민원의 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병역,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 증명은 국가공증제도, 실명확인 근간 주민등록정보는 관련법에 근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감시, 통제 용도의 정보제공은 불가 지문은 과학적인 신분확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사고, 수배자 색출 등 이용

④ 個人情報流出

쟁점사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커,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및 피해 심각 보안시스템 취약 분실카드 악용 및 정보유출 	<p><기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커침입 방지장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벽, 공중망과 분리된 전용망 사용 모든 정보처리내역·담당자·시간 기록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별 자료 분리구축, 정보집중 방지 - 시스템 운영자별 보안카드 지급 주민카드 위·변조 및 악용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 - 주민카드의 정보전송 암호화 처리 - 주민카드 보안키 및 잠금장치 내장 - 주민카드 도안 화폐수준 비표처리 <p><제도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시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형법 314조, 3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킹시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 벌금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제750조, 7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배상·보상규정 주민등록법 제21조2항 신설(처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카드 무단열람자·불법사용자·위·변조자는 3년이하 징역

5 프라이버시 保護權

쟁점사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권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파일에 비밀번호 수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령에 의거 주민이 신고한 정보만 관리 • 뚜렷한 목적하에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 - 주민등록, 운전면허 등의 제도운영을 위해 수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신고하면서 동의한 사항 - 정보통합에 의한 수집은 각 개별법을 개정 근거규정 신설 • 정보주체의 정보공유 거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운전면허 등의 정보는 주민이 사회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특히, 주민등록제도는 조세, 병역 등 국가 존립과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 • 정보수집 이전에 법규제정 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령 근거 규정 존재 - 정보통합에 관한 규정은 법개정시 반영 ※ 법개정후 정보통합 예정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든지 열람가능